

##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5.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국들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당사국들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
- 나. 당사국들 간 양자 무역에서 발생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는 것

### 제5.2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당사국들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 제5.3조 권리 및 의무

당사국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 제5.4조 협력

1. 당사국들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자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3. 특히 당사국들은 제5.6조에 설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당사국들에 할당된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협력 활동을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더하여, 당사국들의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국제 표준 및 국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
- 나.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 질병 또는 병해충 관리 방법, 실험실 시험 기술, 그리고 국내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에 대하여 협력 강화
- 다. 당사국들의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의처 간의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
- 라. 동물 질병, 식물 병해충 및 식품안전을 포함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 공동연구 수행 및 그 연구 결과의 공유, 그리고
- 마.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5.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중 일부는 특정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관한 규제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고, 각 당국의 관심을 고려하여 그들의 역량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국들은 그들의 작업 계획과, 필요한 경우, 부속 작업반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

### **제5.5조 정보교환**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모든 정보나 설명이 당사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소통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들은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대한 비준수에 관련된 정보를 권한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당국을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상호 간에 교환한다.
3.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과 위험분석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분석 절차의 상태를 알린다.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행정 또는 입법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한다.

### **제5.6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1. 당사국들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한다.

-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당사국들의 권한있는 당국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
  - 라. 규제, 절차, 수출 작업장 승인 또는 당사국의 위생 지위의 모든 변화를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마.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한 문제,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논의한다.
  - 바.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 사. 필요한 경우,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관심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룰 목적으로 기술적 논의를 위한 부속 작업반 설치를 고려한다. 그러한 작업반의 회의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개최되고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 아. 제5.4조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 활동을 조정한다. 그리고
  - 자. 당사국들이 부여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2년마다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6. 위원회는 다음의 접촉선이 조정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Desarrollo Económico)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그리고

바.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 **제5.7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2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